|  |  |  |
| --- | --- | --- |
| **기업 경영범위 등기 관리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76호  <기업 경영범위 등기 관리규정>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장마오(張茅)  2015년 8월 27일  **제1조** 기업 경영범위 등기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기업의 경영행위를 규율하며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 등기 관리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등기한 기업은 이 규정의 관할을 받는다.  **제3조** 경영범위는 기업이 종사하는 경영활동의 업무 범위이며 법에 따라 기업등기기관에 등기해야한다.  신청인은 <국민경제 업종분류>를 참조하여 하나 또는 두개 이상의 소분류, 중분류 또는 대분류를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경영범위 등기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국민경제 업종분류>에서 규범하지 아니한 신흥 업종 또는 구체적인 경영항목은 정책문건, 업계 관행 또는 전문문헌 등을 참조하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기업의 경영범위는 정관 또는 합명계약의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경영범위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기업은 정관 또는 합명계약을 개정해야 하며 기업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4조** 기업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영범위 중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따라 등기 전에 반드시 비준을 거쳐야 하는 경영항목(이하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으로 칭함)은 등기를 신청하기에 앞서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득한 후 비준기관의 비준문건, 증서를 소지하고 기업등기기관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기업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영범위 중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 등에 따라 등기 이후 반드시 비준을 득해야 하는 경영항목(이하 '후치(後置)허가 경영항목'으로 칭함)은 법에 따라 기업등기기관의 등기 허가를 받은 후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득해야만 후치(後置)허가 경영항목의 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5조** 기업등기기관은 심사비준기관의 비준문건, 증서에 따라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을 등기해야 한다. 비준문건, 증서 상에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에 대한 설명이 없을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의 규정과 <국민경제 업종분류>에 따라 등기한다.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 이외의 기타 경영항목의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기업의 정관, 합명계약 또는 신청을 근거로 하고 <국민경제 업종분류> 및 관련 정책문건, 업계 관행 또는 전문문헌을 참조하여 등기한다.  기업등기기관은 경영범위 끝에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경영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 경영활동 전개가 가능함.)'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제6조** 기업 경영범위에 허가경영항목이 포함된 경우 기업은 심사비준기관의 비준문건, 증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내에 기업신용정보공시스템을 통하여 비준문건·증서의 명칭, 심사비준기관, 비준내용, 유효기한 등 사항을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그 중, 기업 설립 시 신청하는 경영범위에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이 포함된 경우 기업은 설립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내에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의 비준문건, 증서가 변경된 경우 기업은 변경비준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변경 사항을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7조** 기업의 경영범위는 기업명칭 중의 업종 또는 경영 특징이 포함되거나 반영되어야 한다. 다업종 경영을 하는 기업의 경우 그 경영범위 중의 첫번째 경영항목이 소속되는 업종을 기업의 업종으로 한다.  **제8조** 기업이 경영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에 대한 결의 또는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업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그 중, 합명기업과 개인독자기업이 경영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결정일로부터 15일 내에 기업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범위 변경이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과 연관되었거나 또는 그 비준문건, 증서가 변경된 경우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일로부터 30일내에 비준문건, 증서를 소지하고 기업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범위 변경이 후치(後置)허가 경영항목과 연관되었거나 또는 그 비준문건, 증서상에 기재된 경영항목 용어가 기존 등기설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변경된 경우 비준문건, 증서를 소지하고 기업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분할 또는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기업이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 취급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비준기관의 비준문건, 증서를 소지하고 기업등기기관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분할 또는 합병으로 존속하는 기업이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 취급을 신청하되 변경등기 전에 이미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쳤을 경우에는 심사비준 수속을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다.  **제10조** 기업 유형이 변경되고 기업 유형 변경 이전에 이미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에 대한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득했을 경우에는 기업은 심사비준 수속을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기업의 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미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득한 기존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은 출자자 변경 이후 다시 심사비준 소속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업의 출자자가 국내투자자에서 외국투자자로 변경되거나 기업의 출자자가 외국투자자에서 국내투자자로 변경되는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심사비준기관의 비준문건, 증서에 따라 경영범위를 다시 등기해야 한다.  **제12조**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분지기구(이하 '분지기구'로 약칭)는 그 경영범위가 소속기업의 경영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심사비준기관이 분지기구의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을 단독으로 비준한 경우 기업은 분지기구의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 비준문건, 증서를 소지하고 해당 경영범위의 증가를 신청해야 하며 증가를 신청하는 경영범위 뒤에 ('분지기구 경영')이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분지기구가 소속기업 경영범위 중의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득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기업이 신청하는 경영범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등기기관은 등기를 불허한다.  (1)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에 해당되나 심사비준기관의 비준문건, 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2)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따라 비준을 득한 항목만을 취급할 수 있는 특정 업종의 기업이 기업이 기타 항목을 신청한 경우.  (3)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 등에 의해 기업의 경영이 금지된 경우.  **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은 관련 항목의 경영을 중단하고 지체없이 기업등기기관에 경영범위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1) 경영범위 중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을 제외한 기타 항목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의 규정에 의해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으로 조정되었으나 기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신청하여 비준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  (2)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의 규정에 따라 경영범위 중의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에 대한 심사비준을 다시 받아야 하나 기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신청하여 비준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  (3) 심사비준기관이 비준한 경영기한이 만료되었으나 기업이 경영범위 중의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에 대한 심사비준 수속을 다시 신청하여 비준을 득하지 아니한 경우.  (4) 경영범위 중의 전치(前置)허가 경영항목의 허가증 또는 기타 비준문건이 취소된 경우.  **제15조** 기업이 비준, 등기 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  **제16조** 이 규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7조**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6월 14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12호로 공포된 <기업 경영범위 등기 관리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  | **企业经营范围登记管理规定**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76号  　　《企业经营范围登记管理规定》已经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10月1日起施行。  　　 局长 张茅  　　 2015年8月27日  **第一条** 为了规范企业经营范围登记管理，规范企业经营行为，保障企业合法权益，依据有关企业登记管理法律、行政法规制定本规定。  **第二条** 本规定适用于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登记的企业。  **第三条** 经营范围是企业从事经营活动的业务范围，应当依法经企业登记机关登记。  　　申请人应当参照《国民经济行业分类》选择一种或多种小类、中类或者大类自主提出经营范围登记申请。对《国民经济行业分类》中没有规范的新兴行业或者具体经营项目，可以参照政策文件、行业习惯或者专业文献等提出申请。  　　企业的经营范围应当与章程或者合伙协议规定相一致。经营范围发生变化的，企业应对章程或者合伙协议进行修订，并向企业登记机关申请变更登记。  **第四条** 企业申请登记的经营范围中属于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决定规定在登记前须经批准的经营项目（以下称前置许可经营项目）的，应当在申请登记前报经有关部门批准后，凭审批机关的批准文件、证件向企业登记机关申请登记。  　　企业申请登记的经营范围中属于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决定等规定在登记后须经批准的经营项目（以下称后置许可经营项目）的，依法经企业登记机关核准登记后，应当报经有关部门批准方可开展后置许可经营项目的经营活动。  **第五条** 企业登记机关依照审批机关的批准文件、证件登记前置许可经营项目。批准文件、证件对前置许可经营项目没有表述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决定的规定和《国民经济行业分类》登记。  　　前置许可经营项目以外的经营项目，企业登记机关根据企业的章程、合伙协议或者申请，参照《国民经济行业分类》及有关政策文件、行业习惯或者专业文献登记。  　　企业登记机关应当在经营范围后标注“(依法须经批准的项目，经相关部门批准后方可开展经营活动)”。  **第六条** 企业经营范围中包含许可经营项目的，企业应当自取得审批机关的批准文件、证件之日起20个工作日内，将批准文件、证件的名称、审批机关、批准内容、有效期限等事项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其中，企业设立时申请的经营范围中包含前置许可经营项目的，企业应当自成立之日起20个工作日内向社会公示。  　　审批机关的批准文件、证件发生变更的，企业应当自批准变更之日起20个工作日内，将有关变更事项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  **第七条** 企业的经营范围应当包含或者体现企业名称中的行业或者经营特征。跨行业经营的企业，其经营范围中的第一项经营项目所属的行业为该企业的行业。  **第八条** 企业变更经营范围应当自企业作出变更决议或者决定之日起30日内向企业登记机关申请变更登记。其中，合伙企业、个人独资企业变更经营范围应当自作出变更决定之日起15日内向企业登记机关申请变更登记。  　　企业变更经营范围涉及前置许可经营项目，或者其批准文件、证件发生变更的，应当自审批机关批准之日起30日内凭批准文件、证件向企业登记机关申请变更登记。  　　企业变更经营范围涉及后置许可经营项目，其批准文件、证件记载的经营项目用语与原登记表述不一致或者发生变更的，可以凭批准文件、证件向企业登记机关申请变更登记。  **第九条** 因分立或者合并而新设立的企业申请从事前置许可经营项目的，应当凭审批机关的批准文件、证件向企业登记机关申请登记；因分立或者合并而存续的企业申请从事前置许可经营项目的，变更登记前已经审批机关批准的，不需重新办理审批手续。  **第十条** 企业改变类型的，改变类型前已经审批机关批准的前置许可经营项目，企业不需重新办理审批手续。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决定另有规定的除外。  **第十一条** 企业变更出资人的，原已经审批机关批准的前置许可经营项目，变更出资人后不需重新办理审批手续。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决定另有规定的除外。  　　企业的出资人由境内投资者变为境外投资者，或者企业的出资人由境外投资者变为境内投资者的，企业登记机关应当依照审批机关的批准文件、证件重新登记经营范围。  **第十二条** 不能独立承担民事责任的分支机构（以下简称分支机构），其经营范围不得超出所隶属企业的经营范围。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决定另有规定的除外。  　　审批机关单独批准分支机构经营前置许可经营项目的，企业应当凭分支机构的前置许可经营项目的批准文件、证件申请增加相应经营范围，并在申请增加的经营范围后标注“（分支机构经营）”字样。  　　分支机构经营所隶属企业经营范围中前置许可经营项目的，应当报经审批机关批准。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决定另有规定的除外。  **第十三条** 企业申请的经营范围中有下列情形的，企业登记机关不予登记：  　　（一）属于前置许可经营项目，不能提交审批机关的批准文件、证件的；  　　（二）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决定规定特定行业的企业只能从事经过批准的项目而企业申请其他项目的；  　　（三）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决定等规定禁止企业经营的。  **第十四条** 企业有下列情形的，应当停止有关项目的经营并及时向企业登记机关申请办理经营范围变更登记或者注销登记：  　　（一）经营范围中属于前置许可经营项目以外的经营项目，因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决定规定调整为前置许可经营项目后，企业未按有关规定申请办理审批手续并获得批准的；  　　（二）经营范围中的前置许可经营项目，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决定规定重新办理审批，企业未按有关规定申请办理审批手续并获得批准的；  　　（三）经营范围中的前置许可经营项目，审批机关批准的经营期限届满，企业未重新申请办理审批手续并获得批准的；  　　（四）经营范围中的前置许可经营项目被吊销、撤销许可证或者其他批准文件的。  **第十五条** 企业未经批准、登记从事经营活动的，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予以查处。  **第十六条** 本规定由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负责解释。  **第十七条** 本规定自2015年10月1日起施行。2004年6月14日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12号公布的《企业经营范围登记管理规定》同时废止。 |